

# 公職選舉 및 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03. 10.

제안자 : 정치개혁특별위원장

## 1. 제안경위

가.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을 김용균 의원, 박주선 의원, 신기남 의원, 김학원 의원의 서면동의로 제출함.

나. 제243회 국회(정기회) 제1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(2003. 10. 16)는 동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등을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## 2. 제안이유

헌법재판소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180일로 규정한 법 제53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사퇴시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3. 주요골자

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 조정함(안 제53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##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

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제3항중 “180日까지”를 “120일까지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